

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96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03. 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3월 0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「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」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통보된 ‘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’ 통보에 따라 권고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고문변호사의 장기 위촉제한 내부규정 신설 (안 제2조제2항)
- 퇴직공직자에 대한 소송지원 제한 규정 신설 (안 제2조제7항)
- 고문변호사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신설 (안 제3조의2)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중 ‘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·운영 투명성 제고’ 관련 5개의 세부과제 내 미흡한 3개 분야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, 고문변호사의 사건상대방 소송수임이나 법률자문을 금지하도록 하여 소송업무 수행에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송수행 제도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상위법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